

시 방 서

2004. 8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명 : 지하층 민원실 설치 및 16층 회의실 정비공사

2. 공사범위

| 구분 | 지하층 민원실 | 16층 회의실 | 기타(8,15층) |
|---------|---|---|--|
| 철거공사 | 조적17.03 m ³ , 방수층32.24 m ² , 천정 34.23m ² | - | |
| 철골공사 | 경량천정3 4.23m ² , 스텐레스틀21.6m ² SGP칸막이 22.8m ² , 갈바스틸 25.48m ² 석고보드(천정68.46m ² , 벽체 99.34m ²) | - | SGP칸막이21m ² |
| 목공사 | 목구조틀 44.4m ² , 걸레받이 25.5m ² 볼딩설치 49.4m ² , MDF 21.66m ² | 목구조틀7.5m ² 합판붙이기21.96m ² 걸레받이및볼딩61.5m ² MDF설치 7.5m ² | 마루틀및널13.88m ² |
| 유리공사 | 강화유리 42.72m ² , 양개강화도어1EA | 유리설치3.2m ² | |
| 수장및도배공사 | 데코타일59.71m ² , 도배공사 23.85m ² , 시트(필름)설치 50.75m ² | 도배 157.25m ² 시트(필름)12.96m ² | 비닐장판13.88m ² |
| 습식공사 | 바닥미장 37.84m ² , 조적벽쌓기 2.655m ² , 화강석붙이기 15.2m ² | - | |
| 도장공사 | 천정 39.5m ² , 벽체 22.8m ² | - | 천정29.85m ² 벽체58.89m ² |
| 기전설비공사 | 형광등 22EA, 환풍기1EA, 냉난방설비 이전1EA, 스프링클러헤드이전10EA | 파라보릭설치24EA U랩프17EA 스프링클러헤드20 | 전기온돌판넬 1SET |
| 기타공사 | 칠판설치 1EA, 전동롤스크린설치 1SET, 기타잡공사등 | 이동식칸막이17.5m ² 전동스크린2EA 사인물 및 기타잡공사 | 편개도어(SGP) |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4. 적용범위

가.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지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이 지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교통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지방서를 기준한다.

5. 적용순서

가. 도면과 본 지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방을 우선으로 하고 감독원 해석에 따른다.

나. 본 지방과 도면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이의

설계도서 및 각 지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 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 하였을

때 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7.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8.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공정 예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 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 하여야 한다.

라. 시공도

도급자는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현장 사정으로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 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재료 (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이와 동등한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등의 반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공기준

가. 설계도서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 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시공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민, 형사는 물론 손해 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전에 필요한 안전관리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하고, 항상 주

의를 환기시킬 것이며, 공사중에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2. 현 장 관 리

- 가. 도급자는 현장내 근로자의 풍기단속,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 하여야 한다.
- 나. 현장내에는 자격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 다. 시공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 유의 하여야 한다.
- 라.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3. 현 장 대 리 인

-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건축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이력서,자격증사본,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나.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 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4. 공 사 보 고

- 가.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근로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시 공정별 전·후 사진을 3장씩 제출해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5. 준 공 도

- 가.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나.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6. 설 계 변 경

- 가.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도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경 미 한 변 경

- 가.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등의 위치를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나. 도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꼭 필요한 부품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감독원의 요구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뒷 정 리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제2장 도 장 공사

1. 적 용 범 위

- 가. 민원실 및 회의실 내부의 천정, 벽체 및 칸막등의 소지에 도장재료(이하 도료라고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 가.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 나.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엷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엷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3. 도 장 공 정

- 가.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각 공정별 공사완료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다.

4. 도 장의 견본품

- 가. 모든 재료는 종류별 견본판을 도장 회수마다 견본품을 제출하고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도 장 시 험

- 가. 모든 도장은 공정, 공법, 도장 기능공의 기능, 색상, 광택배색, 마무리 정도 및 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하며 시험은 견본판 또는 실물에 직접 도장한다.

6. 시 공

- 가.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 나.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 다.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 라.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 마.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S.G.P 칸막이 공사

1. 유용재의 처리

- 가.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반출 및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나.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3. 시설보호

-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나.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상황의 파악

- 가.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 5. 칸막이와 천정면이 접하는 부분은 기존의 천정과 같이 AL MOLDING과 동일 제품으로 시설한다.

- 6. 신설하는 칸막이는 기존의 판넬과 동일한 규격 및 색상으로 한다.

- 7. 도어 설치시 칸막이를 가공 할 때는 세밀한 시공으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 8.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 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제4장 타일 및 도배공사

1. 적용범위

민원실 바닥 데코타일 및 기타 도배 및 시트(필름)설치등 기타 그 부속재 사용에 적용한다.

2. 여유자재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재질 및 타입별(Type)로 총 소요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3. 바닥재의 종류 및 두께, 규격 등의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며 지정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4. 자재검수

가. 자재는 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5. 작업준비

바탕은 평탄하게 잘 다듬고 스테인휠라, 바니스, 락카, 조합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이내의 건조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탕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에 따라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꾸어야 한다.

제5장 기 타 공 사

1. 천정공사 및 경량철골공사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실시하되 최대한 기존시설물에 손상이 없는 방향으로 실시하되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한후 공사를 실시한다.
2. 기타 전기 및 소방라인 이설공사 및 급·배수설비 이전공사는 기존 부속품을 최대한 이용하여 설치하고 설계도면 및 내역에 없는 사항은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후 실시한다.
3. 타 공정과 중복되지 않도록 감독원과 사전 협의후 실시하되 부득이 하게 시공상 문제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처 혹은 감독원과 사전회의를 거쳐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